

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상훈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서울시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마을공동체 공간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는 마을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, 마을활력소 사업추진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, 합리적 사업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-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의 사업목적과 운영방식을 함께 규정하던 것을 분리하고, 마을배움터의 운영목적은 “마을배움 실천과 활성화”로 정하고, 위탁운영 대상을 ‘민간’에서 ‘법인·단체로

규정하는 등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동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주셔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ㄴㄴ